

대구지방법원 2024. 11. 27 선고 2023나451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재판경과

대구지방법원 2024. 11. 27 선고 2023나451 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3. 8. 9 선고 2022가단1117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상서

피고, 항소인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경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조정

변론 종결2024. 9. 25.

판결 선고2024. 11. 27.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3. 8. 9. 선고 2022가단1117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478,018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7. 13.부터 2024. 11.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8,7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각자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로부터 지정 받은 특정한 판매구역 내에서만 D 등 C의 제품에 관한 독점판매권을 가지면서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이른바 지국장이다.

나. 1) 원고는 1995. 12. 1. C와 사이에 판매구역을 '경주시내 일원'로 정하여 C가 발행하는 신문의 공급과 판매에 관한 계약(이하 '제1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C의 경주지국을 운영하였다.

2) 피고는 2012. 2. 1. C와 사이에 판매구역을 '경주시 E, F, G, H, I(이하 '이 사건 계쟁 구역'이라 한다)'으로 하여 M이 발행하는 신문의 공급과 판매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피고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C의 J지국을 운영하였다.

3) 원고는 2019. 2. 1. C와 사이에 판매구역을 '이 사건 계쟁구역을 제외한 경주시 모든 행정구역'으로 하여 M이 발행하는 신문의 공급과 판매에 관한 계약(이하 '제2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3. 7. 1.부터 2021. 12. 31.까지 별지 판매내역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계쟁 구역 밖에 위치한 경주시 문무대왕면 소재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수원'이라 한다), 경주시 K 소재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에 합계 48,780,000원의 D를 배달하여 판매하였다(이하 '이 사건 판매행위'라 한다).

라. 원고는 2013. 12. 19., 2015. 5. 20., 2017. 4. 6. 피고에게 이 사건 판매행위에 대하여 판매구역 침범을 이유로 신문투입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채권에 대해서는 배타적 효력이 부인되고 채권자 상호 간 및 채권자와 제3자 사이에 자유경쟁이 허용되므로 제3자에 의하여 채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거래에서 자유경쟁 원칙은 법질서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공정하고 건전한 경쟁을 전제로 하므로, 제3자가 채권자를 해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법규를 위반하거나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하여 채권의 실현을 방해하는 등으로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였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채권침해의 위법성은 침해되는 채권 내용, 침해행위의 양태, 침해자의 고의나 해의 등 주관적 사정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되, 거래자유 보장의 필요성, 경제·사회정책적 요인을 포함한 공공의 이익, 당사자 사이의 이익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6다10827 판결 참조).

2)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피고 계약 당시 C는 경주시내 일원을 판매구역으로 하는 제1차 계약을 원고와 체결하고 있었던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계쟁 구역만을 판매구역으로 정하여 이 사건

피고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계쟁 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대한 판매를 할 경우 다른 구역의 독점판매자(원고)의 지위를 해칠 것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계쟁 구역을 벗어난 한수원 및 L에 D을 배달판매한 점, ④ 원고는 2013. 12. 19., 2015. 5. 20., 2017. 4. 6. 피고에게 이 사건 판매행위에 대하여 판매구역 침범을 이유로 판매중지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사건 판매행위는 원고가 제1, 2차 계약에 의하여 주식회사 C로부터 부여 받은 독점판매인으로서의 지위 내지 이익을 직접 침해하여 상업거래의 공정성과 건전성을 해치고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경제적 질서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판매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액의 산정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1. 나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과관계 부존재

- 1) 피고는, 한수원과 L가 원고에게 구독요청을 하였으나 원고가 협조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C 본사의 승인을 받아 2013년부터 L에, 2016년부터 한수원에 D을 판매하게 된 것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2)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기간의 제한

- 1) 피고는, 설령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제2차 계약을 체결한 이후의 판매행위에 대하여서만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원고가 1995. 12. 1. 체결한 제1차 계약에는 판매구역이 '경주시내 일원' 되어 있는 바, 1995. 1. 1. 경주군과 통합전 경주시가 통합되어 현재의 경주시(통합 경주시)가 되었고, 제2차 계약에서는 '이 사건 계쟁구역을 제외한 경주시 모든 행정구역'으로 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제1차 계약에 기재된 판매구역인

'경주시내 일원'은 통합 전 경주시 중 일부(번화가)로 한정된다. 그런데 한수원은 2016. 2. 말경 경주시내에서 약 22km 떨어진 불국로 1655(양북면 장항리)로 본사를 이전하였고, L도 경주시내에서 한참 떨어진 K에 소재하고 있어 제1차 계약에서 정한 판매구역 밖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L와 한수원에 신문을 판매한 행위가 원고의 제1차 계약상의 판매독점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갑 제13,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제1차 계약 이전에 이미 경주군과 통합 전 경주시가 통합되어 현재의 경주시가 되었던 점, '시내'는 '도시의 안 또는 시의 구역안', '일원'은 '일정한 범위의 지역'을 의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경주시내 일원'은 '통합된 경주시 행정구역 내의 모든 지역'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특별손해 제외 주장

1) 피고는, 설령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자신의 매출원가는 원고와는 달리 판매가격의 40%인 바,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의 매출원가 차액 부분(40% - 30%)에 해당하는 손해는 특별손해이고 피고가 원고의 매출원가가 30%임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손해는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매출원가 차액부분에 해당하는 손해를 특별손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민법 제765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액 감액 주장

1) 피고는, 설령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손해가 인정될 경우 피고의 영업이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이 있으므로 민법 제765조 제1항1)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이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피고에게 민법 제756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상계의 항변

1) 피고는, 설령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의 판매구역인 ○ 제1공장, P아파트 Q호에 신문을 판매하였고, 그 부당이득액은 ○ 제1공장 140,400원(= 1부당 월

매출원가 18,000원 × 13개월 × 0.6), P아파트 부당이득액 최소 5,076,000원(= 1부당 월 매출원가 18,000원 × 10부 × 47개월 × 0.6) 이므로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을 상계의 주장으로 선행하여 보더라도 채무자는 고의의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다 할 것이고(민법 제496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러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소멸시효

1) 피고는, 설령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판매구역 침범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2013. 12. 19.자, 2015. 5. 20.자, 2017. 4. 6.자 내용증명을 보냈으므로 최소한 2017. 4. 6.자 내용증명을 보낼 당시에는 손해의 발생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제기일(2022. 7. 5.)로부터 역산하여 3년 이전까지의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22. 7. 5.로부터 3년 전인 2019. 7. 4.까지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지급할 손해배상액은 2019. 7. 5. 이후 발생한 손해로 한정된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는 2013. 7. 1.부터 2021. 12. 31.까지 계속되었으므로 2021. 12. 31.경 손해가 확정되었고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손해의 발생과 가해자를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안 때를 의미하고, 불법행위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지는 결과 손해도 역시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손해는 날마다 새로운 불법행위에 기하여 발생하는 손해로서 민법 제766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각 손해를 안 때로부터 각별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30285 판결 참조). 따라서 2021. 12. 31.경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또한 2021. 12. 31. 이후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판매를 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손해배상채무를 승인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위 손해배상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판매내역표 '손해배상액'란 기재 손해배상액 13,478,018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의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2022. 7. 1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 등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4. 11. 2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판사박만호

판사신안재

판사이재덕

별지

1)민법 제765조 제1항은, 배상의무자는 그 손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 영향으로 인하여 배상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에는 배상액의 감경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 있어 판매구역 침범에 있어 피고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은 없었다 할 것이고,